

공 보

제606호 2017. 8. 16.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훈 령

거창군 훈령 제412호 거창군 공무원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3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7-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7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7-911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
공시송달 공고 9

거창군 공고 제2017-915호 경남(거창지구)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(안) 열람공
고 11

거창군 공고 제2017-920호 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..... 13

회 계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거창군수양등인

2017년 8월 16일

거창군 훈령 제412호

거창군 공무원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(제5조제2항 관련)

부 서 별	합 계	가직군 단순노무원			나직군 기능종사직				다직군 숙련종사직	청원 경찰
		소계	행정 보조원	현장 근로원	소계	검침원	발간실	도로 보수원	농기계수리	
총 계	72	37	33	4	17	3	2	12	3	15
기획감사실	2				2		2			
행 정 과	11 10	8 7	5 4	3						3
재 무 과	1	1	1							
복지정책과	2	2	2							
경제교통과	2	2	2							
문화관광과	4	1	1							3
산 림 과	1	1	1							
환 경 과	1	1	1							
건 설 과	12	1	1		12			12		
의회사무과	2	2	2							
농 업 기술센터	8 9	5 6	5 6						3	
보 건 소	5	4	4							1
평생교육센터	6	5	5							1
수 도 사 업 소	7				3	3				4
체 육시 설 사 업 소	2	1	1							1
거창사건 사 업 소	3	1	1							2
거 창 읍	1	1		1						
면	1	1	1							

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제안이유

- 휴직, 복직으로 인한 근무지 지정 요청

2. 주요내용

- 공무원근로자 정원조정에 따른 별표 변경: 총 정원 변동사항 없음

부서명	직군	인 원			비고
		당초	변 경	증·감	
행 정 과	행정보조원	4	5	1	휴직
농업기술센터	행정보조원	6	5	△1	복직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8. 16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16-41 외 5건(부여 4건, 폐지 2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86-8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422-19	2009-04-01	2017-08-16	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	
2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08-8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보해길 850-25	2009-04-01	2017-08-16	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	
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6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16-41	2009-12-28	2017-08-16	고려 흥무란 때 왜적에게 절개를 지켜 순절한 탐진 최씨로 인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4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0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3길 73	2017-07-19	2017-08-16	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	

○ 도로명주소폐지

일련 번호	폐지도로명주소	고 시 일		폐지사유	비고
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136	2009-04-01	2011-07-29	건물철거	
2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218-103	2009-04-01	2011-07-29	건물철거	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3항에 의거 「둔기지구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4명(붙임참조)
2. 공고기간 : 2017. 8. 10. ~ 2017. 8. 24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기타사항
 - 가.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(☎055-940-332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8. 10.

거 창 군 수

조정금 이의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개월		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		
	주소	전화번호				
토지의 표시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
					총전 면적	확정된 면적
조정금 결정금액	m ² 당 금액			총금액		
	원			원		
조정금 결정내용 []납부고지 []수령통지						

이의신청 사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수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 담당 부서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경남(거창지구)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(안) 열람공고

경남 거창군 일원에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(구, 가야문화권 특정지역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하오니, 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92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8. 11

거 창 군 수

1. 계획개요

가. 명 칭 : 경남(거창지구)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(안)
(구,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)

나. 대상지역 : 거창군 일원 118.3km²

다. 계획기간

- 당초 : 2011년 ~ 2019년

- 변경 : 2011년 ~ 2020년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주 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- 성 명 : 거 창 군 수

마. 사업계획

구 분	사 업 명	비 고
역사·문화 자원 복원 및 개발·정비 사업	거열산성 복원사업	
도로·교통 기반시설 사업	금원산자연휴양림진입도로	
	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사업	변경
	금귀산봉화대 연결도로 정비사업	

2.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사업명	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사업	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사업	
위 치	거창읍 상림리, 가지리, 대동리, 대평리 일원	거창읍 상림리, 가지리, 대동리, 대평리 일원	
사업비	37,200백만원 (국비 28,000, 군비 9,200)	43,600백만원 (국비 28,000, 군비 15,600)	
사업량	도로개설 L=4.4km, B=12.0m	도로개설 L=4.4km, B=12.0~20.0m	

3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(이의신청)기간 : 2017. 8. 16 ~ 2017. 8. 30

나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92)

4. 기타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일

거창군수

1. 자치법규명: 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

2. 개정 이유

- 거창군 소속 공무원(무기계약근로자 포함)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신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⇒ ‘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’
- 고문변호사 선임 범위를 추가하여 변경(안 제2조)

- 변호사 ⇒ ‘변호사 또는 법무법인’

○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조항 신설(안 제7조)

- 거창군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민·형사 사건으로 피소 및 제소 될 경우, 오천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단,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,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, 보험사 또는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도록 함.

4. 예고기간: 2017. 8. 17.~9. 5.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기획감사실장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주소: (우 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기획감사실)

전화번호: 055) 940-3075

FAX: 055) 940-3029

6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☎ (055)940-3075】

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안

의안 번호	2017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7. 8. .
제 출 자	기획감사실장

1. 개정 이유

○ 「거창군 소속 공무원(무기계약근로자 포함)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

2. 개정 내용

○ 제명 변경(안 제명)

“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”를 “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○ 고문변호사 선임 범위를 추가하여 변경(안 제2조)

“변호사 중에서”를 “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” 로 한다.

○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조항 신설함(안 제7조)

제7조(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)

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(이하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)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(고소, 고발 등을 포함한다)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오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다만,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
3.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명서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
2.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
3.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

○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(사건 실적부)
2. 별지 제2호서식(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신청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미편성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

라. 그 밖의 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 : 2017. 8. ~
- 4) 비용추계서 :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사 건 실 적 부 (월)

종 류	사 건 명	의뢰년월일	의뢰내용	회신년월일	회신내용	비 고
※ 종류는 “소송사건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법령해석, 기타”로 기재함						

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										
신청인	성명	성명: (남 / 여), 직급:								
	소속									
사건 번호		민사			고소·고발			공소		
		법원	접수일	사건번호	경찰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	검찰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
		법원	접수일	사건번호	법원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	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
지원 신청 금액		금 원			계좌 번호					
사건 개요										
첨부 서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위서 및 관련 서류 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정 판결문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관련 서류								
<p>「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거창군수 귀하</p>						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	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	이중기술에 해당되어 간결하게 제명 개정
제2조(위촉)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	제2조(위촉) -----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-----.	위촉 대상을 명확히 하고, 범위를 확대
<신 설>	제7조(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)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(이하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)이 <u>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(고소, 고발 등을 포 함한다)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오천만원 범 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다만,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u>	거창군 공무원이 <u>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민·형사 사건으로 피소 및 제소 될 경우, 변호사 비용을 포함 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</u>

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
3.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명서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
2.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
3.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

관계법령

□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

(제정) 1991.03.27 조례 제1204호
(일부개정) 1994.02.17 조례 제1318호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고문변호사(이하 "변호사"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위촉)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 3조 (고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제 4조 (위촉기간)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사건실적부 비치)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개정 (1994. 2. 17 조례 제1318호)

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2. 17 조례 제 131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